

장학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칙에 규정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다루는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, 심의한다.

1. 장학금 확보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선발에 관한 사항
3. 근로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학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각 대학원장, 각 처장, 각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학생과장이 된다.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.

② 위원장의 위임으로 학생처장이 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 (심의 및 시행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.

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7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 (주관부서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학부 장학은 학생처에서 대학원 장학은 대학원에서 담당한다.

제9조 (협조요구권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1.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
2.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의 출석 및 의견 개진
3.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비밀유지)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 장학위원회 심의내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

본다.